

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4월 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4. 18) 상정
- 제12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06. 4. 18)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한 기 주)

가. 제안이유

-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법률 제7665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되고,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경기도 회계과-1245, 2006. 1. 27)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각 실·과·소별로 물품 운용관을 지정하여 물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
(안 제2조·제20조·제21조제1항·제22조제1항 및 제26조)
- 기증품 중 심의대상 물품은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기증품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구성이 되는지?</p> <p>○ 물품운용관 지정 사유는?</p>	<p>○ 경기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의 경우 경기도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함.</p> <p>○ 현재 보다 강화된 물품의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지정을 하고자 함.</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00호
의결 년월일	2006. 4. 19. (제126회)

제출년월일 : 2006. 4. 5.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제정(법률 제7665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227호, 2005. 12. 30. 공포, 2006. 1. 1. 시행)되고,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도회계과-1245, 2006. 1. 27)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각 실·과·소별로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안 제2조·제20조·제21조제1항·제22조제1항 및 제26조)
- 나. 기증품 중 심의대상 물품은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물품관리조례”를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영관,”으로 한다.

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영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물품운영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를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이용관, 전용품은 물품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은”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이용관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물품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을 각각 “물품관리관”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청·소의 장이”를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동조중 “조제”를 각각 “작성”으로 한다.

제26조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물품이용관”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물품출납사무의 검사)”를 “(물품관리사무의 검사)”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을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으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품종구분 기준 (1)비품중 제2항을 삭제하고, 동표의 품종구분

기준 (2)소모품의 제4항중 “3만원이하”를 “10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물품관리조례</u></p> <p>제2조(관리책임) ① · ② (생략)</p> <p><신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생략)</p> <p><신설></p> <p>②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 물품관리 조례</u></p> <p>제2조(관리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p> <p>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 「공유재산 및 물</p>

현 행	개 정 안
<p>(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및 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p>	<p>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 ----- ----- ----- -----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1조의2(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p>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p> <p>1. ~ 8. (생략)</p>	<p>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p> <p>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한 물품으로서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 용품매각 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p> <p>1. ~ 3. (생 략)</p> <p>② (생 략)</p> <p>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u>각 호의 1</u>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 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할</p>	<p>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현 행	개 정 안
<p>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⑤ ~ ⑧ (생략)</p>	<p>-----</p> <p>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p> <p>-----</p> <p>-----.</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제20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p>	<p>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수 있다.</p> <p>②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p>	<p>제21조(일시보관) 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p> <p>-----</p> <p>-----</p> <p>-----.</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p> <p>-----</p> <p>-----.</p>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u>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u>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 훼손하 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 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u>다만, 전용자의 보관 물품으</u> <u>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u> <u>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u> <u>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u></p> <p>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u>시장 또는 청·소</u> <u>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 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 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u>시장 또</u> <u>는 청·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u> <u>한다.</u></p> <p>④<u>청·소의 장이</u> 물품출납원으 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 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u>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u> <u>은</u> ----- ----- ----- ----- --. <삭 제></p> <p>② ----- ----- -----<u>물품관리관</u>----- -----.</p> <p>③ ----- ----- -----<u>물품관리</u> <u>관</u> ----- -----.</p> <p>④<u>물품관리관은</u> ----- ----- ----- -----.</p>
<p>제25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 장</p>	<p>제25조(장부의 작성) -----</p>

현 행	개 정 안
<p>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이 적은 장부는 년도구분을 명확 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p>	<p>----- 작성 ----- ----- ----- -----.</p>
<p>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u>물품출납원</u> 또는 분 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 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p>	<p>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 <u>물품출납원, 물품운</u> <u>용관</u> ----- ----- -----.</p>
<p>제27조(<u>물품출납사무의 검사</u>)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 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 (과장이 있는 청·소 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 의 장이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27조(<u>물품관리사무의 검사</u>)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 에 관한 검사는-----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u>물품출납사무의 사고 보고</u>)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물품을 망 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 관리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시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야 한다.</p>	<p><삭 제></p>